

환급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
가입자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		(전화번호 :)		
저축명		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		계약기간	
				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	
저축 해지일		주택 취득일 (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만 작성)		환급 신청일	
년 월 일		년 월 일		년 월 일	
환급신청액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1조제7항 및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장기주택마련저축
· []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추정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저축취급기관장) 귀하

첨부서류	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(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함)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1조제7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추정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하며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추정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